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58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585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가소10859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5.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가소10859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2. 8.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미시 C 답 587㎡, D 답 1,592㎡, E 답 1,38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상속인들로 구성된 F 종중의 소종회(이하 ‘이 사건 소종회’라 한다)의 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8.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 수입 및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종회 총무인 G으로부터 분배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종회 회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H의 상속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익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종회의 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청구할 권원에 관하여 단순히 원고가 종원으로서 청구한다고 할 뿐 그 구체적 청구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한숙희, 판사 박대준